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933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721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9334 판결

전문

원 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희, 문윤식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은 2014. 1. 1. 05:3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3 올림픽대로 양화선착장 앞 노상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피고차량은 그 무렵 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3) 원고차량은 위 올림픽대로를 진행방향 우측(4차선)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피해자의 일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58.85m 전방 2차로에 떨어졌고, 피해자의 일행은 약 45m 전방 1차로에 떨어졌다.

4) 피고차량은 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5) 당시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되나 원고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상에 떨어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진행 경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2. 17.경 피해자의 사망 원인 내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올림픽대로를 횡단하는 도중 (3차로 상에서) 원고차량의 앞범퍼에 왼쪽 다리가 충격되고 이어서 차량의 앞부위에 2차 충격된 후 (2차로 상에) 전도되었고, 그 이후 피고차량에 의하여 몸통부위를 중심으로 역과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왼쪽 정강뼈의 손상은 원고차량과 1차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위의 손상은 이후 원고차량과의 2차 충격, 전도 및 피고차량의 역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부검소견만으로 피해자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중 어느 차량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검찰은 2014. 6. 10.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다가 이미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날리고 있던 것을 발견한 직후 제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었던 점,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전방에서 날리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이미 도로에 전도되어 있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한 피의자에게 이미 도로 상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미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날리고 있던 상황 자체만으로는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어 있는 사실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2015. 3.경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제금 7,69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중 어느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50%이고 원고가 손해배상금 7,69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8,485,000원(7,697만 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거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의 우측 차로인 3차로에서 약 122km로 과속하던 원고차량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한겨울인 1. 1. 05:38경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으로, 그 때 올림픽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④ 피고차량은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80km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우측 차로인 3차로에서 약 122km로 과속하던 원고차량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점, ⑤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진행방향 전방에 날리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2차로에 떨어져 있었던 상태로, 피해차량의 속도, 당시 어둠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 이 사건 사고 지점과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날린 지점, 그리고 피해자가 떨어진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차량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